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-89호

「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7일

## 대전광역시의회의장

###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코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함(안 제4조제1항제1호).

#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운영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21, FAX 042-270-5019, E-mail : ychm11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7월 1일”을 “6월 1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집회) ① (생략)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집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-----6월 1일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#### 제54조 (정례회의 집회일 등)

-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 [개정 2016.1.12] [[시행일 2017.1.1]]
-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 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-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